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60호 2011. 11. 14.(월)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76호(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7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8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7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22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42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6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43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27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819호(터널어린이공원 명칭 변경 재공고) 28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825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826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0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831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선, 주차장)공사완료 공고) 44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833호(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5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개정 이유 ○ 행정여건과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 주요 내용 ○ 신규사무에 대한 부서지정 및 업무수행부서 변경 - 부서변경 ·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전략사업추진단 ⇒ 기획감사실) - 신규사무 ·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 전략사업추진단 · 항만·물류 사업과 관련한 전략 개발 사업 및 추진 : 전략사업추진단 · 기업프랜들리에 관한 사항 : 전략사업추진단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1. 14.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476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전략사업추진단”과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부서 사무분장표 (제9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전략사업 추진단	1.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관한 사항 2. 각종 문화·체육 관련 복합시설 등 유치에 관한 사항 3.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5. 창안·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6. 인천신항 관련사업 및 배후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개발 및 추진 8. 중소기업 지원관련 원스톱서비스 업무체계 수립·추진 9. 공동주택 주거문화·복지·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감사실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진단에 관한 사항 3. 사무위임, 위탁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4.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구정백서 및 구정현황 발간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구정의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0.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구청장직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공무국외 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회의(대회)유치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사절단 파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7. 지방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8.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 19. 지방제도개선 및 행정쇄신에 관한 사항 20.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지방행정연구과제의 종합분석 및 연구보고에 관한 사항 22. 구본청,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및 결과조치 23. 국정시책 연계 군구평가 총괄관리 24. 주요 대형 프로젝트 점검 확인 및 구민불편사항 확인평가 25. 예산개요(순계 등) 작성에 관한 사항 26. 사업예산 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27. 예산의 조정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8.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감사실	29. 예산의 변경(전용, 이체, 이용, 변경 등) 사용에 관한 사항 30. 성립전 예산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1.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2. 예산의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33.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4.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관한 사항 35. 교부세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6. 교부금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7. 국고 및 시비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38. 재원조정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39.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 40. 지방재정 운영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 41.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42. 지방채무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44.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5. 주민재정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6.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47. 용역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48. POOL 경비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9. 예산절감 대책 및 건전화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50.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1. 재정관리시스템 권한의 설정 및 부여에 관한 사항 52.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3.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4. 지방재정고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5.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감사실	56.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57.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8.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사항 59.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 개정, 폐지, 공포에 관한 사항 60. 고시, 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61.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62.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63.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64. 구 자치법규 및 예규문서 편찬간행에 관한 사항 65.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6.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67.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8.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9.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70.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7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2. 감사 및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73.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74. 청원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75.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76.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77. 민원서류 처리 점검에 관한 사항 78. 감사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79. 공직기강 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 80.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1. 회계에 관한 실지 검사에 관한 사항 82. 클린신고센터 운영 83.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8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5.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감사실	86.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7.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8.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89. 주전산기 및 각종서버 운영에 관한 사항 90. 구내 유·무선 정보통신망(LAN, WAN구간)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91. 네트워크장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2. 내·외부망 보안 및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93. 구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94. 통계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95. 통계자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96. 각종 통계조사(인구주택, 농림어업, 사업체 등)에 관한 사항 97. 읍부즈만 사업추진 체계 확립·추진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 이유 ○ 행정여건과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별 사무를 조정하고 조정사무에 대한 전결권의 합리적 배분 ☐ 주요 내용 ○ 기존사무는 부서만 변경하고 전결권한은 그대로 유지 ○ 신규사무에 대한 전결권 지정 (전략사업추진단)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1. 14.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477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전략사업추진단” 과 “기획감사실” 의 사무전결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의 사무전결사항 <개정 2011.11.14>

[전략사업추진단]

단 위 업 무	실무자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1. 정책 및 전략개발				
정책 및 전략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정책 및 전략개발에 따른 민간교류 및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기안			○
2. 각종 문화·체육 관련 복합시설 유치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기안	○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도시계획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안	○		
3.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및 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기안	○		
공사감독 수행	기안	○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 시행	기안	○		
4. 인천신항 관련산업 및 배후지역 활성화 지원				
인천신항 관련산업 및 배후지역 활성화 지원관련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인천신항 관련 항만정책 분석 및 전략개발	기안	○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안	○		
5. 공동주택 주거문화·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공동주택 주거문화 등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공동주택 지원사업(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홍보	기안	○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공모 및 보조금 지원	기안	○		
주민교육프로그램운영	기안	○		
사업성과보고대회	기안			○
6.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개발 및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중소기업 기술 및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추진	기안			○
산·학·연 협력사업 등 관련정책 개발 및 추진	기안			○
중소기업 지원 원스톱서비스 업무체계 수립·추진	기안		○	
기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단위사업 추진	기안	○		
7.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 발굴	기안			○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기안		○	
8. 연수의제21				
가. 연수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	기안			○
나. 연수의제21 추진협의회 분과 운영	기안	○		
다. 연수의제21 추진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견 수렴	기안		○	

[기획감사실]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실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1. 구 행정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계획 수립	기안					0
나. 구정 방침 결정			기안			0
다. 구정 역점시책 선정		기안			0	
2.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기안				0	
3. 주요업무 시행	기안					0
가. 지침시달	기안		0			
나. 자료조사	기안		0			
다. 최종안 확정	기안				0	
라. 수정계획 수립	기안		0			
마. 주요업무계획서 작성	기안					0
바. 주요업무 발간	기안		0			
사. 주요성과 보고	기안				0	
아. 주요성과보고서 발간	기안		0			
4. 구청장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 관리						
가. 구청장 공약사항						
(1) 종합관리계획수립	기안					0
(2) 추진상황 평가	기안					0
(3) 시정지시 및 독려	기안		0			
나. 월중 역점시책 선정						
(1) 시책선정	기안				0	
(2) 시행 및 집행	기안		0			
다. 우수시책 책자발간						
(1) 계획수립	기안		0			
(2) 자료수집 및 시안작성	기안	0				
(3) 발간시행	기안	0				
라. 확대간부회의						
(1) 시 확대간부회의 자료작성	기안				0	
(2) 회의자료 전파	기안		0			
5. 지시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지시사항						
(1) 지시사항 시달	기안		0			
(2) 추진계획 수립	기안		0			
(3) 진도보고	기안		0			

[기획감사실]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실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4) 최종 결산보고	기안				0	
나. 구청장 지시사항						
(1) 지시사항 시달	기안		0			
(2)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	기안					0
6 . 기구 직제 및 정원관리						
가. 직제(기구)조정		기안				0
나. 사무조정에 따른 관련법규개정	기안				0	
다. 정원관리						
(1) 5급이상 정원증원 및 조정, 직렬변경		기안			0	
(2) 6급이하 정원증원 및 조정, 직렬조정	기안				0	
(3) 정원관리 통계조사 실시	기안		0			
7 . 조직 및 인력 진단						
가. 종합계획 수립 시행		기안				0
나. 세부실천계획 수립실시	기안		0			
다. 자료조사	기안		0			
8 .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						
가. 행정기구 조정자료 조사	기안		0			
나. 사무분장 조정자료 조사	기안		0			
다. 국간 사무분장 조정		기안			0	
라. 국내 실.과간 사무분장 조정	기안		0			
9 . 민간위탁 및 용역에 관한 사항						
가. 위임 및 위탁 관련 자료 조사	기안		0			
나. 대상 사무 확정 보고	기안				0	
10 . 지방분권 · 지방이양 사무 및 갈등현장 관리						
가. 지방분권사무에 관한 사항	기안		0			
나.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기안		0			
다. 갈등현장관리	기안		0			
11 . 위원회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0			
12 . 구청장직 인계 · 인수에 관한 사항						0
13 . 당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0	
14 . 자치단체간 행정교류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0	
15 . 구정백서 및 구정현황 발간						
가. 지침 시달	기안		0			
나. 자료수집 및 시안 작성	기안		0			

[기획감사실]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실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다. 발간 시행	기안				0	
16 국내·외 교류사업						
가. 국내·외 교류 기본계획 수립	기안					0
나. 국내·외 회의(대회) 유치	기안				0	
다.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	기안					0
라.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및 행사계획	기안				0	
마. 해외사절단(시장개척단)파견 기본계획	기안					0
17 . 공무원 공무 국외여행						
가. 해외시찰 및 견학계획	기안					0
나. 공무국외여행 허가 결정						
○ 5급이상		기안				0
○ 6급이하	기안				0	
18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가. 방침 결정	기안				0	
나. 대상사업 제출 요구	기안		0			
다. 사업 승인	기안		0			
19 . 예산의 조정 및 편성						
가. 예산편성방침 결정		기안				0
나. 예산편성지침 시달	기안		0			
다. 예산편성자료 요구	기안		0			
라. 예산편성요구자료 심사일정 통보	기안		0			
마. 예산안 편성		기안				0
바. 예산안 의회 제출	기안		0			
사. 예산확정 고시	기안		0			
20 .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가. 예산배정계획 수립	기안				0	
나. 월별 배정 및 추가배정	기안		0			
다. 예산 재배정	기안		0			
21 . 예산의 변경(전용, 이체, 이용, 변경 등) 사용						
가. 예산의 전용, 이용	기안		0			
나. 예산의 이체	기안		0			
다. 예산운영 상황공개		기안			0	
22 . 예산의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	기안				0	
23 . 성립전 예산의 사용 승인	기안				0	

[기획감사실]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실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24 . 예비비 사용 승인		기안			0	
25 . 지방재정제도 운영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안				0	
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 시달	기안		0			
26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가. 투자심사 분석	기안		0			
나.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안		0			
27 . 교부세 및 교부금 관리						
가. 국고보조금 신청	기안				0	
나. 특별교부세 신청		기안			0	
다. 교부세 산정자료 제출	기안		0			
라. 재원조정교부금 신청	기안				0	
마. 교부금 산정자료 제출	기안		0			
28 . 지방재정분석·진단 및 공시						
가.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 계획 시달	기안		0			
나. 계획수립	기안				0	
다. 공시자료 요구	기안	0				
라. 재정공시(안)	기안					0
마. 지방재정 건전화 운영계획	기안					0
29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가. 위원위촉	기안					0
나. 위원회 개최	기안				0	
30 . 지방채무 발행 및 관리						
가. 지방채 발행계획	기안					0
나. 승인	기안					0
다. 발행	기안		0			
라. 분기별 분석	기안		0			
마. 채무부담행위	기안		0			
31 . 기금운영						
가. 기금편성지침 시달	기안		0			
나. 기금편성자료 요구	기안		0			
다. 기금편성요구자료 심사일정 통보	기안		0			
라.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기안				0	
마. 기금운용계획안 의회 제출	기안		0			

[기획감사실]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실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32 . 예산성과금						
가. 예산성과금 운영계획 수립	기안					0
나. 예산성과금 심사	기안				0	
다. 위원위촉	기안					0
33 . 주민재정참여제도 운영						
가. 주민재정참여 계획수립	기안				0	
나. 주요사업 발굴 공모	기안				0	
다. 사업검토 및 처리결과 회신	기안		0			
라. 설문조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	기안		0			
34 . 구정 주요업무 확인평가						
가. 종합계획 수립 시행	기안		0			
나. 확인 및 평가 보고	기안		0			
35 . 주요업무 자체평가						
가. 자체평가 종합 계획 수립	기안					0
나. 자체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0	
다. 자체평가 최종 결과보고	기안					0
라. 자체평가 자료 제출	기안		0			
마. 시정지시	기안		0			
36 . 현지 확인 평가						
가. 현지 확인 계획 및 실시 통보	기안		0			
나. 현지 결과 통보	기안				0	
37 . 국정시책 등 평가						
가. 수검준비 계획 수립	기안				0	
나. 합동평가보고서 제출	기안				0	
38 . 고객만족(CS)사무에 관한 사항						
가. 고객만족(CS)행정종합계획 수립	기안					0
나. 민원,제도개선(일하는 방식 개선)	기안		0			
다. 고객만족도 조사	기안					0
라.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기안					0
39 .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기안				0	
40 .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기안		0			
41 . 국회요구자료 제출						
가. 자료의 접수 및 수집	기안	0				
나. 자료결과보고	기안		0			

[기획감사실]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실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42 . 구의회 운영						
가. 임시회 소집요구	기안					0
나. 의회부의안건 취합 제출	기안		0			
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자료 계획통보	기안		0			
라. 청원 처리상황 취합 제출	기안		0			
마. 구정질문 취합제출	기안		0			
바. 임시회등 집회결과 보고	기안		0			
사. 회의록 보고	기안		0			
아. 의회 의결안 통보	기안		0			
자. 의사일정 통보	기안		0			
차.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안		0			
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	기안		0			
타. 의회부의 안건 공고	기안		0			
파. 의회의결사항 재의요구	기안					0
하. 기타의회 요구자료 제출	기안		0			
43 . 자치법규의 심사 및 공포						
가. 조례.규칙.훈령.예규안 심사	기안		0			
나. 조례, 규칙 사전 보고	기안		0			
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공고	기안		0			
라. 조례, 규칙 등 법제관계문서의 심사	기안		0			
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제.개정.폐지) 공포.발령	기안					0
바. 자치법규 대본제작 및 추록배부	기안		0			
사. 관보구입대금지출	기안		0			
아. 법령집 구입대금 지출	기안		0			
44 . 자치법규 및 예규문서 편찬 간행	기안		0			
45 .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해석	기안		0			
46 .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가. 제소, 피소 보고	기안		0			
나. 소송 위임	기안		0			
다. 소송대리인 선임, 소송수행자(담당자) 지정 및 변경	기안		0			
라. 답변서(준비서면)제출	기안		0			
마. 소송결과보고	기안		0			
바. 소송비용결정 신청 및 회수	기안		0			
사. 소송비용 면제	기안				0	

[기획감사실]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실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아. 공탁금 지출 및 회수	기안		0			
자. 고문번호사 위.해촉	기안					0
차. 자료수집	기안		0			
카. 소송사무보고	기안		0			
타. 소송진행 상황보고	기안		0			
파. 조정권고안 동의여부(행정)	기안		0			
하. 조정권고안 동의여부(민사)	기안				0	
거. 소취하 동의여부(민사)	기안				0	
너. 소취하 동의여부(행정)	기안		0			
더. 기타 신청사건에 관한 사항	기안		0			
러.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0			
47 .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기안		0			
48 .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 청구 및 접수보고	기안		0			
나. 행정심판 수행자 지정	기안		0			
다. 행정심판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기안		0			
라. 행정심판 결과보고	기안		0			
49 . 규제개혁						
가.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수립	기안				0	
나. 규제개혁 일반에 관한 사항	기안		0			
50 . 감사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가. 종합감사	기안				0	
나. 부분 및 수시감사	기안		0			
51 . 자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						
가. 감사계획 시달	기안				0	
나. 감사일정 변경	기안		0			
다. 감사결과보고 및 처분지시	기안				0	
라. 감사기록대장 확인	기안	0				
마. 감사처분 이행확인	기안		0			
52 . 감사통계 작성	기안		0			
53 . 다수인 민원관련						
가. 민원통제 및 관리	기안		0			
나. 민원처리 점검 결과보고	기안		0			
다. 민원처리대장 기록유지	기안	0				

[기획감사실]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실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54 . 특별지시사항						
가. 현장 및 서면조사	기안		0			
나. 조사결과 보고	기안					0
55 . 공직자 재산등록						
가. 재산등록 신고서 접수	기안	0				
나. 재산조회 및 확인	기안		0			
다. 재산등록 심사	기안		0			
라. 재산등록심사결과 보고	기안		0			
마. 재산등록 신고서 관리	기안	0				
바.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기안				0	
56 . 상부감사관련사항						
가. 수감자료 작성	기안		0			
나. 수감결과 보고	기안				0	
다. 감사동향 보고	기안		0			
57 . 회계에 관한 실지감사	기안		0			
58 . 세입.세출의 결산감사	기안		0			
59 . 징계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가. 5급 이상		기안			0	
나. 6급 이하	기안				0	
다. 기관소청 및 재심청구		기안			0	
60 . 공무원 경고등 훈계처분	기안				0	
61 .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가. 신문보도사항	기안		0			
나. 민원제보에 관한 사항	기안		0			
다. 처리결과 보고	기안				0	
62 . 진정서 접수 및 처리	기안				0	
63 . 사무인계인수사항						
가. 인계인수사항 확인	기안	0				
나. 시정조치	기안		0			
64 . 사정계획						
가. 사정업무추진계획 수립	기안				0	
나. 업무추진결과 보고	기안				0	
65 . 민원서류 처리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	기안		0			

[기획감사실]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실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나. 처리결과 점검	기안		0			
다. 점검결과 보고	기안		0			
66 . 물품망실.훼손사고의 조사처리						
가. 사고신고접수 및 조사	기안		0			
나. 조사결과 보고	기안		0			
67 . 일상감사에 관한사항						
가. 계획수립	기안		0			
나. 감사처리결과 보고	기안		0			
68 . 감사처리 전말보고	기안	0				
69 . 전화 및 구술민원에 관한 사항						
가. 민원접수	기안		0			
나. 조사 및 결과보고	기안		0			
70 . 구민건의사항 처리결과 점검	기안		0			
71 .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상황 점검	기안		0			
72 . 부패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가. 계획수립	기안		0			
나.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기안		0			
73 .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가. 부조리 신고센터제보 접수	기안		0			
나.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	기안				0	
74 .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가. 복무점검	기안		0			
나. 직무감찰	기안		0			
다. 점검.감찰결과 보고	기안				0	
75 .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가. 측정계획 수립	기안		0			
나.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0			
다. 측정결과 보고	기안				0	
76 . 감사관련 대장관리						
가. 징계대장	기안	0				
나. 경고등 훈계처분 대장	기안	0				
다. 감사카드 작성	기안		0			
라.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처리부	기안	0				
77 . 클린신고센터 운영						

[기획감사실]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실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가. 접수금품 보고	기안		0			
나. 신고된 금품처리	기안				0	
78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가. 교육, 상담 이행점검	기안		0			
나. 금품등 접수	기안		0			
다. 신고사항 처리	기안				0	
79 . 옴부즈만 제도						
가. 옴부즈만 제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기안					0
나. 옴부즈만 제도 종합관리	기안		0			
80 .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가.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기안				0
나. 지역정보화 추진	기안				0	
다. 지역정보화 제도 정비		기안				0
81 . 행정정보화추진 계획 수립 및 조정						
가. 연간정보화 계획수립		기안				0
나. 행정정보화 일선기관 추진지도	기안		0			
다. 정보화업무 평가	기안		0			
라. 정보화 예산편성	기안		0			
82 . 정보화 교육 및 환경 조성						
가.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기안		0			
나. 정보화교육 위탁협약서 체결	기안		0			
다. 정보화교육 실시	기안		0			
라. 정보화교육장 운영	기안	0				
마. 정보화 경진대회 실시	기안		0			
83 . 전산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전산보안 업무 계획수립	기안					0
나. 일반(감사·지도점검실시 등) 보안관리	기안		0			
다. 개인정보보호	기안		0			
라. 전산장비.전상망.전산실 보안관리	기안	0				
마. 보안장비(ESM, 방화벽 등) 보안관리	기안	0				
84 . 전산장비 도입 및 운영						
가. 주전산기 도입 기본계획 수립	기안					0
나. 주전산기 운영관리	기안		0			

[기획감사실]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실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다. 전산자료 관리(자료보관 및 반출입 등)	기안	0				
85 . 전산실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	기안		0			
86 . 서울(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운영 관리						
가. 서울(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보급.관리	기안				0	
나. 서울(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기안	0				
87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가.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계획 수립	기안		0			
나.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기안	0				
88 . 네트워크 운영 관리						
가. 네트워크망 관리 계획수립	기안		0			
나. 네트워크망 유지관리 및 운영	기안	0				
89 . 업무용컴퓨터 보급 및 유지보수 관리	기안		0			
90 .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통합관리						
가. 통합소프트웨어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0			
나. 불법소프트웨어 지도 • 단속	기안		0			
91 . 통합백업 운영 및 소산	기안		0			
92 . 통합저장장치(SAN) 운영 관리	기안		0			
93 . 통합 재정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0			
94 .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기안		0			
95 . 통계조사의 종합계획수립 및 분석	기안				0	
96 . 제반통계의 심사 및 통제	기안		0			
97 . 통계연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가. 자료수집	기안	0				
나. 간행물 발간	기안		0			
98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가. 자료수집 및 심의	기안		0			
나. 승인신청 및 발간	기안		0			
99 . 각종 통계조사	기안		0			

인천광역시연수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규칙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이 일부 변경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관한 사항 중 단서조항 신설(제76조제1항) ○ “보통예금계좌”를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로 변경(제76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11. 14.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478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76조제5항 중 “보통예금계좌”를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table><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td></tr><tr><td>납부 번호</td><td>20××××××××××××××</td></tr></table>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	<table><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td></tr><tr><td>납부 번호</td><td>20××××××××××××××</td></tr></table>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	<table><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td></tr><tr><td>납부 번호</td><td>20××××××××××××××</td></tr></table>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																
금원(금원)		금원(금원)		금원(금원)													
정리구분		정리구분		정리구분													
건명		건명		건명													
현금		현금		현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납부자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월일 금고		위와 같이 영수함. 년월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table><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td></tr><tr><td>은행</td><td>××××××××××××××</td></tr></table>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table><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td></tr><tr><td>은행</td><td>××××××××××××××</td></tr></table>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table><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td></tr><tr><td>은행</td><td>××××××××××××××</td></tr></table>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구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u>보통예금계좌</u> 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u>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포함)</u> 를----- -----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0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174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17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15-1	2011.11.09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2011. 11. 09.고시 후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0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140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비 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170-1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140	2011.11.09	건물 증축에따른 주출입구 변경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11.0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
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1-819호

터널어린이공원 명칭 변경 재 공고

청학동 551-5번지 「터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명칭이 어울리지 않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2011. 8. 1. ~ 2011. 8.12. 명칭변경을 위한 공모를 시행하였으나,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재 공고하오니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대상 : 구민 누구나

○ 제안내용 : 「터널어린이공원」의 새로운 공원 명칭

○ 제안형식 : 공원명칭 변경 서식 참조(별표 1)

(명칭과 제안 사유를 모두 작성해야 함)

○ 접수(공모)기간 : 2011. 11. 10 ~ 2011. 11. 24(15일간)

○ 제출(공모)방법 :

▷ E-mail 접수 ⇒ aaal11@korea.kr

▷ 우편 및 방문접수 ⇒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공원녹지과(3층)

▷ 팩스 접수(032-810-7579)

○ 채택제안 시상 : 심사 후 제안자 성명을 공원 표지석에 기록

○ 동일명칭에 다수 응모자가 있는 경우 선착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며,

접수된 자료 및 내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연수구에 귀속됨

○ 기타 문의사항 : 연수구청 공원녹지과(남기훈 ☎ 032-810-7477)

2011. 11. 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별표 1>

공원명칭 변경 서식

○ 공모자

- 이 름 :
- 주 소 :
- 연락처 :

2011년 11월 일

공모자 : (인)

위 치	공원명		명칭부여사유 (구체적으로)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청학동 551-5	터널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82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택법시행령』 개정(2010.7.6)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함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이에 관련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파트 단지별 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을 추가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안 제4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신설(제1항)
- 지원방법(안 제7조)

구청장은 발표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평가 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함(제2항)

○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8조)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1인 이내” 에서 “15인 이내” 로 변경
하고(제2항), 위원은 법률·회계·공동체·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032-810-7746, www.yeonsu.go.kr/
(참조 : 건축과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810-7746, FAX 810-7459 <건축과>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단축 불가피 함

- 사유 : 2012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지원근거 마련으로 시급한 사안임

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구청장은 제2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다.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마.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 주민 공동 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가.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나.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다.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라.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바.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사.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중 “제4조제1항” 을 “제4조” 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제4조제1호에
의한 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5. 사업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 본문을 제①항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8조제2항 중 “11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은 전략사업추진단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법률·회계·공동체·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지원신청서				
공 동 주 택 명				
위 치				
규 모 (동/세대수)		준공일		
지 원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사업비(단위:천원)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명 :	총 계		
	- 내 용 :	자체부담		
		지원신청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 사업명 :	총 계		
	- 내 용 :	자체부담		
		지원신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수구청장 귀하 사업주체(대표자) (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소 장 (인)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2. 커뮤니티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신청서			
공 동 주 택 명			
위 치			
규 모 (동/세대수)		준공일	
지 원 신 청 내 용			
공사구분	개 요	소 요 예 산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장 (인) 관 리 소 장 (인) 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2. 장기수선사업계획서 3. 공사비 산출도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구청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업무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3.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6.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 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u>구청장은 제2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 장비의 설치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다.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 마.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 주민 공동 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u>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 시설물로 한정한다.</u>

현행	개정(안)
	가.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나.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다.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라.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바.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 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사.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5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제 4 조 의----- ----- ②(현행과 같음)
제6조 (지원신청 등) ①제4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6(생략) ②(생략)	제6조 (지원신청 등) ①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제4조제1호에 의한 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6(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7조 (지원방법)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단서신설>	제7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②<신설></u>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11인 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략) ④위원은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토목 및 조경관계전문가 5인으로 구성한다. ⑤~⑩(생략)	<u>②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에 따른다.</u>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현행과 같음) ②----- <u>15인 이내의</u>-----. ③(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전략사업추진단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법률·회계·공동체·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⑩(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82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택법시행령』 개정(2010.7.6)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함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이에 관련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제외(안 제3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한해서 지원가능 하도록 함(제6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032-810-7746, www.yeonsu.go.kr/
(참조 : 건축과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810-7746, FAX 810-7459 <건축과>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조문 대비표

※ 본 규칙안은 입법예고 기간 단축 불가피 함

- 사유 : 2012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지원근거 마련으로 시급한 사안임

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다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한해서 지원 가능)

제4조제2항 중 “조례 제4조 제2항 “을 ” 조례 제4조 “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중 ” 건축과장 “을 ” 현장조사를 의뢰한 부서의 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례 제4조제1항” 을 “조례 제4조제2항”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5(생략) 6.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7(생략)	제3조(지원제외) ----- ----- ----- 1~5(현행과 같음) 6.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다만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한해서 지원가능) 7(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의 조사 선정) ① (생략) ②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건축과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4조(사업의 조사 선정) ①현행과 같음 ② ----- 제4조에 ----- ----- 현장조사를 의뢰한 부서의 장 -----. ③(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금 교부) 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제5조(지원금 교부) ① ---- 제4조제2항 ----- -----. ②(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 83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선, 주차장)공사완료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소3-2호선, 주차장】 사업의 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4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7-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소3-2호선, 주차장)
 - 【명칭】 옥련동 567-2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2,352㎡(도로:371㎡, 주차장 1,981㎡)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2010.11.24~2011.10.01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83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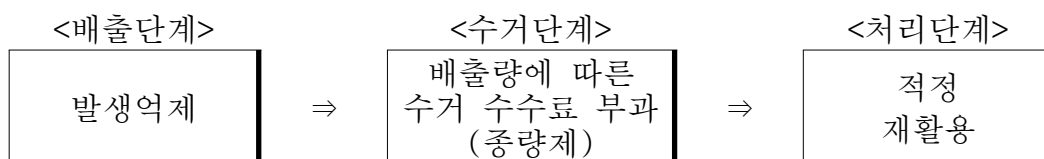
나.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 기본원칙(제4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 관계자의 책무(제5조, 제6조 및 제7조)

-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사업자, 주민)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

○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제8조)

-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및 시책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사업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및 복합찬기이용 등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포장 활성화 등

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제9조)

-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 반영

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제2조)
 -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함(제8조 및 제16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제9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함(제15조)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함(제16조)
-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도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제16조 및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810-7315, www.yeonsu.go.kr/ 참조: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위임된 사항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종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영업점(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

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구청장은 **제7조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책에 적극 참여하거나,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수료 감면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 할 수 있다.

②수수료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제3항에 의하거나,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등을 제작 할 수 있으며, 3ℓ 미만의 경우도 제작 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

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

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수수료 감면규정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종량제 봉투와 혼합하여 지급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2012년 7월 1일부터 3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건조 부산물	- 이물질은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일반종량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⑥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수구청장 □□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깎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깎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깎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⑮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illegible]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연수구청장 귀하							